

의안번호	제 94 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최경천,
임영은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중 내용상 중복으로 불필요한 “장애인가족 지원” 에 대한 정의 삭제 (안 제2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안 제5조)
 -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추가
-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58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마.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로, “장애인가족 구성원” 을 “장
애인가족” 으로, “규정함” 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을 “「장애인복지
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을 “종합적인 정책” 으
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4조제2항제3호 중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제4조제3항 중 “적정한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제6조 중 “지원 시책”을 “지원 정책”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를 “위탁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을 “시행에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 장애인가족----- -----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u>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u>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 책무) ----- ----- ----- -- <u>종합적인 정책</u>----- -----.</p>
<p>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u> 3. <u>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u>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p>③ 도지사는 <u>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u>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u> 3. ----- <u>기관</u> <u>·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u> 4. <u>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의 운영계획</u> 5. (현행 제4호와 같음) <p>③ ----- <u>지원계획</u>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생략) 	<p>제5조(지원사업)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현행 제5조와 같음)
<p>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p>	<p>제6조(자문기구 활용) ----- ----- 지원 정책 ----- -----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 -----.</p>
<p>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신설></p> <p><신설></p>	<p>제8조(사무의 위탁) ① ----- ----- ----- -----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 -.</p>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